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9
----------	-------

제출년월일 : 2016.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관련 법령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내부기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구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 등 상위법령상 규정한 사항 삭제 및 미수룩으로 중복 배제
- 라.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운영 내용 신설(안 제4조, 제5조)
-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내용 변경(안 제6조)
- 바. 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수록(안 제9조, 제10조)

사. 조례 개정 전 기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부칙에 추가(안 부칙 제2조)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3. 10. ~ 2016. 3. 30.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 4. 29)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공무원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

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간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할 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세칙)**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삭제</p> <p>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의 추천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삭제

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공무원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

제4조의2(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2. 긴급·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3.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

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역사 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 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 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 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구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 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 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구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 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 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
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
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
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
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
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제8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간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할 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

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